

대학원학과간협동과정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부산가톨릭대학교 학칙」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.)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학문연구의 발전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·연구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협동으로 교육과정을 구성·운영하는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학과간 협동과정” (이하 “협동과정”이라 한다.)이란 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하는 과정을 말한다.

② “주관학과”란 책임교수의 소속학과를 말한다.

③ “참여학과”란 협동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.

제3조(학위과정 및 정원) ① 협동과정에는 석사과정,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.

② 학위과정별 학과 편성은 학칙 [별표 1의2]와 같다.

③ 협동과정의 모집정원은 각 대학원별 학위과정별 총정원 범위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.

제4조(설치) ① 협동과정의 설치 기준은 매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다.

② 협동과정은 참여학과, 참여교원 등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가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학칙 개정 절차를 거쳐 설치한다.

1. 협동과정 설치 필요성 및 목적
2. 교육목표 및 내용
3. 참여학과 및 교원 목록
4. 교육과정 구성

제5조(폐지) ① 협동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지할 수 있다.

1. 최근 2년간 협동과정 학과의 입학생이 없는 경우
2. 최근 3년간 평균 재학생 수가 5명 미만인 경우
3.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대학원 학과(전공) 신설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

② 협동과정의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.

제6조(교육과정 운영) ① 협동과정의 교육과정은 참여학과의 교육과정 중에서 우선 선정하여 편성하고, 운영상 필요한 교과목을 신설하여 추가로 편성한다.

② 협동과정 교과목과 기존 학과 교과목이 동일할 경우 통합 강의를 할 수 있다.

제7조(학위수여와 학위종별) 협동과정의 학위청구논문 및 논문대체 제출, 심사, 학위수여 및 학위종별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참여교원 등) ① 참여교원은 협동과정의 교원으로 겸무하며, 협동과정 학생을 지도하고 교과목을 담당한다.

② 참여교원은 협동과정 학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나, 학과 신설 요건은 유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책임교수) ①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각 협동과정에 책임교수를 둔다.

② 책임교수는 각 협동과정의 행정업무 전반을 관장한다.

③ 책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0조(행정지원) 협동과정의 학과 행정은 주관학과에서 지원한다.

제11조(운영위원회) ① 협동과정에는 참여교원으로 구성된 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,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비전임교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운영을 총괄한다.
-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해촉 통보를 하지 아니하는 한 연임된 것으로 본다.
- ⑥ 위원회의 회의는 책임교수 또는 운영위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책임교수가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참여교원, 참여학과 변경에 관한 사항
 - 2.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 - 3. 기타 협동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12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